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국제교류 업무 수행을 위한 근거 마련〉
■ 전용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703호)

2026. 4.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오 세 일

목 차

□ 전용기의원 대표발의(제2215703호)	1
Ⅰ. 제안경위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Ⅲ. 검토의견	2
1. 국제교류 업무 수행을 위한 근거 마련(안 제8조제2항)	2

□ 전용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703호)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전용기의원 등 13인

2. 제 안 일 : 2025. 12. 30.

3. 회 부 일 : 2025. 12. 3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원래 자치단체의 영역이었던 광역교통 문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국내 유일의 광역교통 전문 기관임. 대광위는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국의 우수한 광역교통 건설·운영 기술을 필요로 하는 해외 국가들과의 협력 사업을 추진하며, 국내 광역교통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대광위의 업무를 국내 광역교통에 관한 사무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기관과의 교류·협력 업무를 수행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해외 광역교통 분야에 관하여 교류·협력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한국 광역교통 기술의 위상을 높여 국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8조제2항제9호 신설).

Ⅲ. 검토의견

1. 국제교류 업무 수행을 위한 근거 마련(안 제8조제2항제9호 신설)

개정안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라 함)가 광역교통 분야에 관하여 해외 국가 및 기구들과 활발하게 교류·협력할 수 있도록 소관 업무에 “광역교통 관련 국제 교류·협력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8조(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설치 등) ① (생략) ② 광역교통위원회의 소관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8. (생략) <u><신설></u> 9. (생략) ③ ~ ⑤ (생략)	제8조(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8. (현행과 같음) 9. <u>광역교통과 관련된 국제 교류·협력 사항</u> 10. (현행 제9호와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 검토의견

대광위는 대도시권 인구집중으로 교통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영역이었던 광역교통 문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광역교통 전담기구로¹⁾, 일반적인 자문위원회와 다른 광역교통 정책결정권과 조정권, 예산집행권을 가진 행정위원회라 할 수 있음.

현재 대광위는 광역교통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추진계획²⁾의 심의·평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설치 등) ① 대도시권 광역교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둔다.

② **광역교통위원회의 소관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의2에 따른 광역교통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평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 3의2. 제7조의2제6항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 이행과정에서의 이견조정에 관한 사항
4. 제7조의6에 따른 광역교통계정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5. 제7조의7에 따른 도로사업 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6. 제7조의12부터 제7조의15까지에 따른 특별대책지구 및 특별대책에 관한 사항
- 6의2. 제7조의16에 따른 광역교통축의 지정·변경·해제 및 광역교통축별교통대책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 6의3. 제7조의17에 따른 환승편의성 검토에 관한 사항
7. 제10조에 따른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 7의2. 제10조의2에 따른 광역버스운송사업의 운영에 대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1)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광역교통 이견조정을 위해 ‘수도권교통본부’가 운영된 바 있으나 기능에 한계가 있어 해산(2019.4)되고, 대광위로 기능을 이관함.

2)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조(추진계획)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광역교통시행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소관별 추진계획과 연도별 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추진계획을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확정된 추진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확정된 추진계획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7의3. 제12조에 따른 광역교통 서비스 조사·평가에 관한 사항

8.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다음 각 목의 광역교통 사항에 관한 심의·조정

가. 광역철도 등 광역교통시설의 계획수립·조정·확충 및 다른 교통시설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도시권 내 광역버스 등 광역대중교통 수단에 대한 계획수립·조정·확충 및 다른 교통시설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조정을 요청한 사항

9. 그 밖에 광역교통계획의 수립과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광역교통위원회의 소관으로 정한 사항

대광위는 이외에도 세계대중교통협회(UITP, Union Internationale des Transports Publics)³⁾ 등 국제회의 참석, 양자협력 회의 등을 통해 해외 광역교통기구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국내 광역교통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는데,

2023년 11월 한-아세안 스마트 모빌리티 공동선언문 채택을 통해 한국형 전기·수소차, 친환경 대중교통 등 우수 기술을 아세안에 공유하였고, 2025년 11월 베트남 당국과의 고위급 회의 및 협력 포럼을 통해 현지 도시철도 사업 정보를 확보하고 기술·운영 패키지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등 한국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음.

또한, 2025년에는 한-베트남 협력회의를 개최하고, UN ESCAP⁴⁾ 81차 총회에 참석한 바 있음.

3) UITP는 대중교통 연구·기술·정책교류 등을 목적으로 1885년 설립된 기구로 약100여개 회원국, 1,900여개 기관으로 구성(대광위는 '21년 2월 정회원 참여)

4)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 ESCAP,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와 사회 발전을 위해 협력하는 유엔 산하의 기구 중 하나임.

<주요 국제행사 및 회의 참석 현황>

구분	기간	장소	내용
한-베트남 양자회담 및 도시철도 협력 포럼	'25.11.25.~11.28.	베트남	하노이 도시철도 수주지원, 양자회담 및 도시철도 분야 협력 포럼 등
한-베트남 협력회의	'25.4.23.~4.24.	베트남	호치민 도시철도 2호선 수주지원, 한-베 도시철도 분야 협력회의 등
UN ESCAP 81차 총회	'25.4.22.	태국	UN ESCAP 교통안전 관련 기조연설
제14차 한-아세안 교통장관회의	'23.11.7.~11.11.	라오스	교통협력사업 논의, 장관선언문 채택 한-아세안 스마트 모빌리티 공동선언·전략 발표
세계대중교통협회 정상회의 (UITP SUMMIT 2023)	'23.6.3.~6.9.	스페인	UTIP 아태지역 정부기관 위원회(AP OAP) 및 정상회의 참석, 바르셀로나·마드리드 협력회의
우크라이나를 위한 고위급 회담	'23.3.27~4.1	폴란드, 벨기에	우크라이나 교통인프라 조성·재건 및 운영방안 논의, EU 대표부 교통총국 면담
제13차 한-아세안 교통장관회의	'22.10.15.~10.17.	인도네시아	교통협력사업 논의, 장관선언문 채택 한-인니 양자면담(항공 협정 등 연계 확대 논의)
2022 국제교통포럼(ITF) 교통장관회의	'22.5.16.~5.21.	독일	ITF사무총장 연임 투표, 교통안전 장관회의 참석, 우크라이나 사태 규탄, 일본·콜롬비아와 양자면담
해외 광역교통기관 방문	'22.2.23.~3.3	스페인, 프랑스	대광위 소개 및 우수정책 사례 홍보, 광역교통분야 공동연구, 기술협력 추진

자료 : 국토교통부

하지만, 이처럼 대광위가 국제 교류 및 협력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대광위가 해외 기관과의 교류·협력 업무를 수행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대광위가 해외 광역교통 분야에 관한 국제 교류·협력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국내 광역교통 관련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등 국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

참고로, 유사 입법례로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8호⁵⁾에서 금융위원회의 사무를 “금융 및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양자 간 협상, 다자 간 협상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 제9조의5제1항⁶⁾은 분과위원회(권역별위원회, 갈등조정위원회)를 두어 대도시권 광역교통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의 ‘국제 교류·협력 사항’은 지역적 특성과의 관련성이 낮고 갈등조정의 성격을 가지지 않으므로 분과위원회의 업무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5)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 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융에 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 감독 및 검사·제재(制裁)에 관한 사항
3. 금융기관의 설립, 합병, 전환, 영업의 양수·양도 및 경영 등의 인가·허가에 관한 사항
4. 자본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 등에 관한 사항
5. 금융소비자의 보호와 배상 등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
6.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사항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8. 금융 및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양자 간 협상, 다자 간 협상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9.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금융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한 사항

6)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5(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① 대도시권 광역교통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광역교통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9조의6에서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권역별 위원회: 제8조제2항 각 호(**제3호의2 및 제8호는 제외한다**)의 사항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대도시권역별로 심의·의결하기 위한 분과위원회
2. 갈등조정위원회: 제8조제2항제3호의2 및 제8호에 따른 갈등사항을 심의·조정 및 의결하기 위한 분과위원회
-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겸임하고, 광역교통위원회의 상임위원은 분과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 ③ 분과위원회 위원은 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임하되,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 ④ 분과위원회는 갈등사항의 심의·조정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광역교통위원회에 우선하여 심의·조정 및 의결할 수 있다.
- ⑤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국토교통부 의견

광역교통 관련 국제교류·협력 수요 증가,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 필요성 등 감안 시 해당규정의 신설 필요성이 있음.

문 의 처
02)6788-5575

참고

대광위 국제행사 및 참석 현황

□ 개 요

- 세계대중교통협회*(UITP) 등 국제회의 참석, 양자협력 회의 등을 통해 해외 광역교통기구와의 협력체계를 구축지원

* UITP는 대중교통 연구·기술·정책교류 등을 목적으로 1885년 설립된 기구로 약100여개 회원국, 1,900여개 기관으로 구성(대광위는 '21년 2월 정회원 참여)

□ 주요 국제행사 및 회의 참석현황

행사명	기간	장소	내용
한-베트남 양자회담 및 도시철도 협력 포럼	'25.11.25. ~11.28.	베트남	하노이 도시철도 수주지원, 양자회담 및 도시철도 분야 협력 포럼 등
한-베트남 협력회의	'25.4.23. ~4.24.	베트남	호치민 도시철도 2호선 수주지원, 한-베 도시철도 분야 협력회의 등
UN ESCAP 81차 총회	'25.4.22.	태국	UN ESCAP 교통안전 관련 기조연설
제14차 한-아세안 교통장관회의	'23.11.7. ~11.11.	라오스	교통협력사업 논의, 장관선언문 채택 한-아세안 스마트 모빌리티 공동선언·전략 발표
세계대중교통협회 정상회의 (UITP SUMMIT 2023)	'23.6.3. ~6.9.	스페인	UITP 아태지역 정부기관 위원회(AP OAP) 및 정상회의 참석, 바르셀로나·마드리드 협력회의
우크라이나를 위한 고위급 회담	'23.3.27~ 4.1	폴란드, 벨기에	우크라이나 교통인프라 조성·재건 및 운영방안 논의, EU 대표부 교통총국 면담
제13차 한-아세안 교통장관회의	'22.10.15. ~10.17.	인도 네시아	교통협력사업 논의, 장관선언문 채택 한-인니 양자면담(항공 협정 등 연계 확대 논의)
2022 국제교통포럼(ITF) 교통장관회의	'22.5.16. ~5.21.	독일	ITF사무총장 연임 투표, 교통안전 장관회의 참석, 우크라이나 사태 규탄, 일본·콜롬비아와 양자면담
해외 광역교통기관 방문	'22.2.23. ~3.3	스페인, 프랑스	대광위 소개 및 우수정책 사례 홍보, 광역교통분야 공동연구, 기술협력 추진

□ 향후 일정

- 세계대중교통협회(UITP) 정상회의('26.4.21~23, UAE 두바이)
- 세계대중교통협회(UITP) 아태지역 회의(잠정)